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0
----------	-----

2019.07.19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7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7월 10일

(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이상혁)

가. 제안이유

○ '18. 1. 1일자 도 조직개편으로 동물방역과가 신설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 변경

나. 주요내용

○ 심의회 위원 수 및 위원구성 변경(안 제4조)

○ 전문분야 심의회 재적인원 규정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- ‘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인원을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, 가축방역을 위해 기존 축산분야에 가축방역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30명 이내” 를 “40명 이내” 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축산업무 담당과장” 을 “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” 으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농업기술원 축산담당과장” 을 “농업기술원 가축방역담당과장” 으로, 같은 항 제4호 중 “시·군 축산업무 담당과장” 을 “시·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재적인원은 전문분야 위원수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의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30명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충청북도 <u>축산업무 담당과장</u></p> <p>2. 농업기술원 <u>축산담당과장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시·군 <u>축산업무 담당과장</u></p>	<p>제4조(심의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----- ----- <u>40명 이내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 <u>축산 및 가축방역</u>-----.</p> <p>2. ----- <u>가축방역</u>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가축방역</u>-----.</p>
<p>제8조(회의)</p> <p>①~② (생 략)</p> <p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</p>	<p>제8조(회의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재적인원은 전문분야 위원수로 한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가축전염병예방법

제4조(가축방역심의회)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, 시·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.

<개정 2013.3.23., 2015.6.22.>

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15.6.22.>

1.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
2.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
3.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
4.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
5.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(獸醫)·축산·의료·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6.22.>

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,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5.6.22.>

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

제5조(심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<개정 2008.12.31., 2015.12.21.>

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(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. <개정 2008.3.3., 2008.12.31., 2009.4.30., 2011.7.25., 2013.3.23., 2015.12.21.>

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 <개정 2015.12.21.>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,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8.3.3., 2009.4.30., 2011.7.25., 2013.3.23.>

⑤ 심의회회의 위원은 수의(獸醫)·축산·의료·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., 2008.12.31., 2013.3.23., 2015.12.21.>

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에는 질병·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08.12.31., 2015.12.21.>

⑧ 전문분야별 심의회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08.12.31.,

2015.12.21.>

제6조(심의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5.12.21.>

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3., 2013.3.23.>

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12.21.>

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15.12.21.>

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신설 2015.12.21.>

제6조의2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심의회의 간사 등)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 <개정 2008.3.3., 2011.7.25., 2013.3.23., 2015.12.21.>

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12.21.>

③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12.31., 2015.12.21.>